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진료행위(철약, 물리요법, 주사요법)에 대한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적정 치료의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은 무엇인지요?

산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비는 같은 법 제40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며, 동 규정은 '요양 급여의 범위 및 요양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 기준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하신 철약, 물리요법, 주사요법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종합노무법인한솔사무소 (031-877-7582-3)

Q 재해자가 「양막 각막화상 및 각막이물」의 상병으로 00의대부속병원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양막이식술을 5회 행하고 이종요양비로 청구하였는데, 지급가능여부는 어떠한지요?

A 각막손상에 대한 양막이식술에 대한 요양급여 인정여부는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 제2조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5조제4호(치

료재료의 지급)에서 치료재료는 급여 또는 비급여 여부에 상관없이 약사법 기타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 안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각막수술을 위한 양막은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환자치료에 필요한 안정성 및 유용성이 입증된 품목으로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산재환자에게 본인부담을 시킬 수 없다.

본원에서 산업재해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한방진료중 필수

한·방·상·식

의정부 수 한방병원 병원장 /신경정신과 전문의 **이승재**



수 있기 때문에 수확처럼 딱 떨어지게 답이 나오듯 단순하진 않다. 하지만 날씨가 더우면 시원한 것을 찾듯이 더워서 생긴 병은 시원하게 해주고 추워서 생긴 병은 덥게 해주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보충해주고 남는 것이 있으면 빼줘야 한다는 기본원리가 바로 음양의 법칙이다. 가령 겨울에는 추위에 몸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위를 이기는 더운 성질의 보양제인 부자 이충탕 등을 복용하고, 봄에는 간장의 계절이라 하여 간을 보호하는 약을, 여름에는 더위를 이기고 기를 올려주는 보기제로 삼계탕 등을 먹거나 생맥산 등으로 갈증과 허탈증을 다스린 데 반해, 가을에는 건조한 기후에 윤조제로 보습보혈제를 사용하여 스테미너와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이러한 처방 역시 음양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의정부 수 한방병원 (031-620-7200) www.jhanbang.or.kr

기술철 양생법과 보약②

그러나 대부분이 여기 저기서 듣고 아는 것은 많지만 쉽게 무엇을 보약으로 먹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좋다는 약재나 식품은 모두 '보약'이라고 생각해 마구잡이로 먹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진찰실에 들어오자마자 "몸이 안 좋으니 녹용 넣고 보약 한 재 지어주세요", "십전대보탕이요"하며 마치 약을 음식 주문하듯 한다든지, 아니면 깨끗은 개구리나 뱀은 물론이고, 남의 나라 곱까지

들쭉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보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 약재를 배합한 대표적 인 보약처방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환자의 체질이나 증상을 충분히 진찰한 후에야 처방이 내려지는 것이다. 가령 아무리 좋은 녹용 인삼 보약이라 하더라도 몸에 열이 많은 사람에게는 보약이 아니라 사약이 된다. 한방의학은 음양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오행과 상생상극이라는 고도의 철학적 우주법칙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인간과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 섭렵할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정영호**



성형수술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며 걱정을 하셨다. 봉사를 지으시는데 200만원이 넘는 코성형술 비용을 낼만한 형편이 안되신다는 것이었다. 결국 속상하더라도 이왕 다 늙은 거 이렇게 살겠노라고 힘없이 이야기 하셨다.

그래서 필자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해결책을 찾았다. 환자분은 코막힘에 대해서는 국소마취로 간단하게 비중격 만곡술을 30분 남짓 걸려 시술하여 교정하였다. 그 후 윗쪽 꺼져버린 코등은 외에서 필러라는 조직 대체물을 피부에서 주사함으로써 주저앉은 코 모양을 10분만에 복원하였다. 이렇게 시술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코에 메스를 이용해서 절개하여 보형물을 넣는 시술방법의 1/5 수준이었다. 시술 후 아주머니는 근 30년 만에 자신의 콧등을 눈으로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었다며 너무 기뻐하셨다.

포천병원 (031-539-9114)

코 성형술을 이비인후과에서?②

이비인후과에서 코성형과 비중격 교정술을 같이 시행하면 완전한 교정이 가능하며 원래대로 돌아갈 확률이 적어진다. 또한 휘어진 비중격으로 인해 코막힘이 있었던 경우, 수술 후 코막힘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비단 사비나 안경코 등의 외상 혹은 선천적인 외비기형뿐만 아니라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은 여성의 비성형에 있어서도 코를 높이는 용비술이나 코끝을 예쁘게 만들기 위한 비

침성형술의 경우 보형물(이식물)이 필요하다. 이식물로는 자가 조직이 감열, 염증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가장 좋으며 모양도 예쁘고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비인후과에서 수술할 경우 비중격에서 비중격 연골 및 뼈조각을 얻어 이식물로 활용할 수 있어 코어 텍스나 실리콘 등의 인공물만을 이용한 이식술보다 감열, 염증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음과 동시에 보다 자연스러운 코모양을 만들 수 있다. 철원 아주머니의 경우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비성형술과 비중격 만곡술 수술을 동시에 받을 것을 권유드렸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

귀하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귀하가 위 상가건물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귀하에게는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취득세 자진신고 취소절차는 첫째 시청에 검인계약서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고, 취득 후 30일 이내에 매도인과의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증명하는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등의 입증자료를 위 해당 시, 군, 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하처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판결을 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대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 (031-829-9311)

Q 저는 매도인某甲과 상가건물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은 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상가건물을 담보로 제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

A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그런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상사로서의 태도를 보면, ▶부하직원을 칭찬할 때 쓰다듬거나 가볍게 치는 행위도 성희롱으로 오해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그런 행동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부하직원이 '말같다', '아들같다' 하면서 쓰다듬거나 안마를 요구하거나 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는다. ▶자신과 관리하는 영역에서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며 일단 성희롱이 발생하면 그 행동을 중지 시켜야 한다. ▶중재, 경고, 징계 등의 조치 이후 가해자가 보복이나 앙갚음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성희롱을 당하면서도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중지 시켜야 한다. (여성부 지침)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성희롱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성희롱은 평소 서로를 성적으로 대상화하지 않음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 동료로서의 태도를 보면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하거나 생뭉신 등으로 갈증과 허탈증을 다스린 데 반해, 가을에는 건조한 기후에 윤조제로 보습보혈제를 사용하여 스테미너와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이러한 처방 역시 음양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표현한다. 불 불명한 대응은 상대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상대가 자신의 성적 언동에 적극 찬동하지 않거나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이를 거부의사로 받아들이고 즉각 행동을 중지한다. ▶상대가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적인 의사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회식때 술 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으며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동료의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됩니다.

그런데 귀 질의와 같이 기계제작 설치를 하고 시험가동을 완료한 후에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의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기 예정(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당해 거래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한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을 받거나 중도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선수금 등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입니다.

세무사 박 운 중 031-872-6116

Q 공작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하고 시험가동이 완료될 때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받은 후에 거래대금을 수령하기로 계약을 하고 납품을 하였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발행방법과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재화와 용역의 거래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과세표준의 신고시기 등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거래시기를 잘못 파악할 경우 가산세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1조 제 1항 제 4호에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Dong Sung Uni-Tech.Co.

최첨단 시스템으로 모든 제품에 완벽을 추구하는 **동·성·유·니·테·크**

차별화된 제품생산으로 고객만족을 지향하며 미래를 열어갑니다



〈생산품목〉

- ◆접착테이프
- ◆수입마스킹
- ◆순간접착제
- ◆스프레이,라카
- ◆우레탄 폼
- ◆양면 테이프

본사 및 공장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8 / 전 화 : (031) 532-8004 / 팩 스 : 031-532-5792 / 대 표 장 재 수